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, 동법시행령 제60조, 제62조, 제65조
-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(안)

나.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 제2005 - 413호(2005. 09. 05.~2005. 09. 26.)

⇒ 의견제출사항 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고성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1조에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방재단 조직은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조직하되 읍면별로 방재단을 조직 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, 안 제5조에서 방재단의 임원자격과 임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방재단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는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·면의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재난지역 대책과 방재정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7조는 방재단원의 임무를 부여하였으며
 - 안 제8조(소집), 안 제9조(운영 등), 안 제10조(금지행위), 안 제11조(출입증 발급), 안 제12조(교육), 안 제13조(훈련), 안 제14조(중앙지원단 자문 등), 안 15조(감독) 등을 규정하여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조직, 관리하고 교육훈련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자문과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16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과 기존 고성군 수방단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효율적이고, 체계적으로 재난의 예방과 방재활동이 개인과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는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보고합니다.

8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면 방재단의 정수가 미정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과부족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책은 ?
- 답 : 개인이나 방재단업무와 관련있는 단체, 봉사단체 위주로 신청을 받을 것이며, 사전에 해당기관 단체에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을 받을 것이며, 방재단원은 250명 전후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.
- 문 : 단체에 협조 요청하면 단체에서는 활동중이지마는 방재에 있어서는 활동 능력도 없는 사람이 신청하여 방재단의 활동이 부실 운영될 수 있다. 단체만 만들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바람.
- 문 : 지난 예를 보면 방재장비가 부족하여 긴급을 요할 때 장비나 인력을 긴급 동원하는 근거는 ?
- 답 : 조례에 의하여 동원하고 그 댓가로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.
- 문 : 읍면 방재단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?
- 답 : 읍면 방재단은 군방재단원의 구성요원으로 단체와 개인의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.

9. 토 론 : 없음

10. 심사결과

- 2005. 10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